

2022년 수성구 일반임기제공무원(청소년동반자실무) 임용시험 공고

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6월 3일

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	근무예정 부 서	임용계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담 당 업 무
청소년 상 담 복 지 센 터	청소년 동반자 실무업무	교육지원과	사회복지9급 (일반임기제)	1명	2년	· 청소년동반자 운영 사업 총괄 · 찾아가는 상담지원 · 청소년안전망 유기적 연계 운영 · 대상청소년 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제공 · 청소년동반자 행정 및 회계업무 ·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업무 등

※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, 이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)

2 법령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
-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-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」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2조(상담과 전화 설치 등)
- 「2022년 청소년 사업안내」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

3 응시자격 요건

■ 공통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- 연령: 만 18세 이상
- 성별: 제한 없음 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거주지(지역) 제한 없음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)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§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§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

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- 1. 공공기관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

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- 마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
- 바. 안전 감독 업무, 인·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

사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. 다만,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.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■ 임용분야 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[직무분야: 청소년상담복지센터]

- 자격요건: (①&② 충족)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,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- ※ ②요건 해석 시 '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'도 포함 가능

① 관련 자격증 소지	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	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
◆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□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□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□사회복지사 1급 이상 □상담심리사 2급 이상 (한국상담심리학회) □전문상담사 2급 이상 (한국상담학회) □임상심리사 2급 이상 □직업상담사 2급 이상 □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	◆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□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·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(단,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 □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※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	◆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□청소년(지도)학,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보건학 및 상담·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

- 1)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- 2)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- 3) 전임근무(8시간/1일)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:주 20시간근무), 근무시간(주 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4 보수수준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등에 따라 **연봉 하한액 책정**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**자격능력경력** 등을 고려하여 책정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9급(상당)	49,202천원	

- ※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임용구분별 하한액 원칙, 하한액이 없는 9급의 경우 경력을 반영한 호봉 산출 후 일반직 9급 공무원 월지급액 기준으로 연봉 책정
- ※ 연봉 외 급여(각종 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■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2. 6. 14.(화) ~ 6. 16.(목), 3일간	2022. 6. 24.(금)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게시	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

○ 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**자격능력**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□서류전형 기준: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,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

- 합격자 발표: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

○ 2차 면접시험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궤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

※ 불합격 기준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'로 평정한 때

-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 발표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 응시원서 접수

- 교부처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을 출력하여 사용
- 접수기간: 2022. 6. 14. ~ 6. 16. (3일간) (09:00~18:00)
- 접수장소: 수성구청 행정지원과(본관 3층)
-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(등기)
 -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
- 주소: 우(42086)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, 수성구청 행정자원과(인사팀)

※ 마감일 우편접수 시 사전 유선연락(☎053-666-2234)

※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7 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(별지서식 제1호)
-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 제2호)
 - 응시수수료 : 수입증지(5,000원)를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입
 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- 이력서 1부(별지서식 제3호)
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자기소개서 1부(A4용지 2~3매)(별지서식 제4호)
-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서식 제5호)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6호)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7호)
-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 -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(별지서식 제8호) 제출
-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
 -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 - 재직기간, 직위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, 연락처 기재

□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)

□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
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⇒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□경력(재직)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9호) 추가 제출(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)

○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
○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10호)

8 기타(유의)사항

○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
※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
○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□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갈음

-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,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교육지원과(☎053-666-4241),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(☎053-666-22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직무기술서

직 무 군	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선발예정인원
청소년상담복지센터	청소년동반자 실무업무	지방사회복지서기보 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수성구	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

주요업무	○ 청소년동반자 운영 사업 총괄 ○ 찾아가는 상담지원 ○ 청소년안전망 유기적 연계 운영 ○ 대상청소년 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제공 ○ 청소년동반자 행정 및 회계업무 ○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련 업무 등
------	--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, 조직이해능력(조직체제이해능력) ○ (직급별 역량)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, 상담자윤리, 컴퓨터활용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판단력(위기사례확인 여부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

필요지식	○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○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및 평가 ○ 청소년상담 관련 지역사회기관 의뢰 체계를 적극 활용 ○ 청소년 사례 통합 관리 운영 ○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
------	--

관련분야 : 청소년동반자 실무업무		
응 시 자 격 요 건	자 격 기 준	① 관련 자격증 소지 ◆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-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-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- 사회복지사 1급 이상 - 상담심리사 2급 이상 (한국상담심리학회) - 전문상담사 2급 이상 (한국상담학회) - 임상심리사 2급 이상 - 직업상담사 2급 이상 -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
		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◆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(단,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 -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※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 업무 반드시 명시
		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◆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- 청소년(지도)학,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보건학 및 상담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
(①&② 충족)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,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(※②요건 해석 시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)		
우대요건		사회복지사 2급 이상